2017년 (공공)과학기술기반 창업기획사 지원사업 추진계획

2017. 04.

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

Commercializations Promotion Agency for R&D Outcom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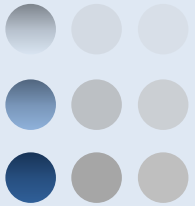
목 차

Ⅰ 사업개요

Ⅱ 2017년도 사업안내

Ⅲ 추진일정

Ⅳ 접수안내





Ⅰ 사업 개요







Coordinator
Contact point
Connector

Ⅰ. 사업개요

추진배경

○ **공공연구기관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활용한 사업화는 부족**

- 대학, 출연(연)이 보유한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'과학기술 창업 활성화 ' 를 위해 지원기관의 역량 활성화 필요

○ **연구자, 기업, 공공TLO,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주체간 네트워크 및 협업활동 부족**

- 공급자와 수요자간 네트워크 활동 부족으로 시장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술사장되는 상황 발생

○ **과학기술기반 창업의 내실화를 통한 수익창출 모델 다양화 및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추진**

- 기술창업 기업의 5년 내 생존율은 한국이 29.6%, 미국이 43%로 생존율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

추진목적

○ **전문적·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기획사를 선정해 (공공)과학기술기반창업을 활성화**

- 기술발굴부터 법인설립까지 전주기에 걸친 창업지원으로 '질' 중심의 (공공)과학기술기반 창업기업 설립

- 대학.출연(연)과 민간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생태계 구축

II 2017년도 사업추진 전략







Coordinator
Contact point
Connector

II. 2017년도 사업추진 전략

추진전략

○ **공공연구기관 별 전담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해 (공공)과학기술기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창업 및 과학기술 창업기반 확대**

- 유망 과학기술 및 예비창업자 발굴
- 적합한 기술인력 매칭을 통한 과학기술 창업 Platform 구축, 비즈니스모델(BM) 수립을 통해 확산 창업지원 모델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추진

○ **시점별 맞춤형 기술창업지원 활동이 가능한 전문기관을 창업기획사로 선정하여 매칭된 공공연구기관들의 창업 활동 전반을 지원**

- BM 수립 및 고도화 지원, 기업가정신 및 마케팅 교육 추진
-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, 법인설립, 투자유치 등 지원

○ **우수한 (공공)과학기술 및 민간 기술사업화 역량의 매칭을 통해 성과창출**



Ⅲ 추진계획(안)









지원대상

○ **민간 기술거래기관, 사업화전문회사, 엑셀러레이터, 벤처캐피탈, LLC형 VC 등 기술창업지원 가능한 기관**

*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

기술거래기관	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
사업화전문회사	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 전문회사
엑셀러레이터	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의해 등록된 법인 - 초기창업기업(팀)을 대상으로 투자 및 보육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중 위 법률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
벤처캐피탈(VC)	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
신기술금융업자	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
LLC형 VC	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

예산규모

◆ **예산규모 : 12억원**

- 창업기획사 당 1억원 내외(과제 목표 및 기술분야에 따라 차등 지원)

지원기간

◆ **협약 후 10월 내외**(2017.5 ~ 2018.2)

- 사업기간 내 창업기획사는 제시한 설립 목표를 달성하고 근거자료(사업자등록증)를 제출

추진내용

○ **과학기술창업 전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추진(공공연구기관↔창업기획사)**
- 단독/다수의 대학·출연(연)과 창업기획사간 과학기술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기술 및 예비창업자 발굴
- 기술-인력매칭 및 우수 모델 발굴

○ **창업준비지원**
- 협약을 체결한 대학·출연(연)의 (공공)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사업화 교육, 계획수립 등 전반적인 준비과정 지원

○ **법인설립지원**
- 기술이전(출자) 협상 및 계약, 법인설립,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지원

○ **사후관리지원**
- 설립 후 성과창출까지 단계적 계획 수립,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차기아이템 도출 지원 등

<창업기획사와 공공연구기관 역할(예시)>

구 분		창업기획사	공공연구기관
발굴 단계	공공기술 발굴	-	우수 유망기술 Pool 제공 및 추천
	창업인력 발굴	JV 의향이 있는 수요기업 발굴	창업희망 연구인력 발굴
검토 및 준비단계	아이템 검토	시장분석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	-
	BM 개발/시제품 제작	유망 아이템에 대해 BM 개발	시제품 제작 지원(예비창업팀)
	교육 및 멘토링	창업팀에 대해 경영, 재무 등 실무교육, 사업 아이템 고도화 멘토링	공공기관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(장비, 공간 등)
	사업계획 작성	법인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	-
법인설립 단계	기술출자/이전 계약	-	기술가치평가 및 출자/이전 계약
	법인 설립 지원	법인설립을 위한 전반적 지원 등	-
	초기 투자 유치	자체 또는 민간 투자사 유치 지원	-
사후관리 단계	사후 관리	경영 컨설팅, R&BD 과제 수주 지원, 등	기술에 대한 후속 지원,
	후속 투자 유치	VC 투자 유치 지원(IR 행사 지원 등)	-

평가지표

항목	지표	평가내용	배점
자체 보유 역량(50)	인력 구성	o 해당전문가 인력구성 - 기술사업화관련 전문가 인력비율 - 컨설팅/교육 등 전문가 경력 현황 등	20
	지원 실적	o 최근 3년간 기술사업화(법인 설립 및 창업지원 포함) 지원실적	10
	지원 시스템	o 교육/인프라(기술, 인력) 지원역량 o 자체 투자 또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보유 역량	20
사 업 계 획 및 목표(50)	사업 계획	o 대학.출연(연)과의 업무협약의 구체성 및 협업계획의 적정성 o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교육 및 멘토링, 법인설립*, 투자유치까지 창업지원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o 설립법인에 대한 사후관리, 성장지원 방안	30
	목표	o 목표의 도전성 및 달성방안의 구체성 * 목표제시 예시 : 창업교육인력 00명, 창업 대상 (공공)과학기술발굴 00건, 기술창업법인 설립 00건 등 설정 및 구체적인 달성방안	20
계			100

1) 도전적 성과목표 제시할 경우 평가 및 예산에 반영
2)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변경 가능

Ⅲ. 추진계획(안)

추진일정 (안)

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('17.3~4)	• (사업공고) (공공)과학기술기반 창업기획사 지원사업 공고(3월) • (신청서 접수) [(업무협약)공공연구기관↔창업기획사]→실용화진흥원(4월)
사업설명회 개최('17.4)	• 대상 : 대학출연(연) 등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수행 민간 기업(창업기획사) ※ 민간 기술거래기관, 특허법인, 사업화전문회사, 민간 기술지주회사, 민간 투자회사 등
1차 서면평가('17.5) 2차 발표평가('17.5)	• **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한 2배수 내외 2차 평가 대상자 선정** • **최종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자(컨소시엄) 선정**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('17.5)	• 과제협약 및 사업비 지급 - 1차년도 : '17.5~'18.2(약 10개월 내외)

Ⅳ. 접수안내

신청방법

○ **방문 또는 우편접수(마감시각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/ '17.4.28(금) 18시 까지)**
○ **접수처 :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**
- **주소 :** (06752)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실용화전략팀

문 의 처

○ **소관 담당부서 :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**
○ **전문기관 :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실용화전략팀**
- 전화 및 e-MAIL : 02-736-9105 / kms@compa.re.kr

*신청서 제출 및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서류

○ **사업신청 공문서** : 신청기관별 1부
○ **사업계획서 인쇄본** : 10부<제본하여 제출(원본 2부, 사본 8부)>
○ **사업신청 공문 및 계획서 파일** : USB 메모리 또는 CD 등 1개
○ **증빙서류** : 업무협약서 포함 관련 제반 증빙자료 등 2부 <원본 중 2개에 첨부/제본하여 제출>

Ⅳ. 접수안내

지원제외

○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7조 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)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
○ 미래창조과학부 및 타 부처·기관 유사사업과 동 신청과제의 연구목표,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
○ 접수마감일 기준 기관 및 대표자가 신용불량상태이거나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
○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

※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